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점인정인턴 프로그램 안내

(공학지식의 실무응용)

(현장실습 운영 기준) 현장실습은 학생이 향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실무 교육을 포함한 실무 실습 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문화체험이나 스터디,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지양).

(현장실습 운영 시간) 현장실습은 휴게시간(1일 1시간 이상)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실습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업이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야간 현장실습은 운영할 수 없다.

(학생보험 의무 가입) 기업은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 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업 멘토 배정) 기업은 학생을 지도할 능력을 갖춘 담당자(개인 혹은 그룹 멘토)를 배정하고, 학생이 성실히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학생의 출석 및 평가 관리를 한다. 멘토는 요청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현장실습 성적을 기재한 인턴평가서를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여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학점 인정) 방학 동안 4주 이상의 기업체 인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정규학기에 개설되는 공학 지식의 실무응용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학점을 받을 수 있다 (현장실습만으로는 학점인정 불가함). 정규학기 수업시간에는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공학지식 응용 사례를 발표하고, 학교에서 배운 교과 내용과의 연계를 통하여 앞으로의 학습방향 및 진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성적은 인턴보고서¹ 및 발표², 기업 멘토가 작성한 인턴평가서³를 토대로 부여한다.

(학생의 권리와 의무) 위 조항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학생은 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구체적인 구현내용은 공개할 수 없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및 알고리즘의 내용을 인턴보고서에 작성할 수 있다. 학생은 본인의 사유로 더 이상 실습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기업과 학교에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 실사)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는 실습기간 중 1회 이상 기업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학생의 수행 태도 및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15조 제4항].